

보도시점 2023. 12. 13.(수) 08:00 / 배포 2023. 12. 12.(화) 16:00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 발표

-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결과 5개 품목 용량축소 확인
 - 사업자와의 자율협약을 통한 용량축소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용량 변경 표시의무를 제도화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최근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숨은 물가상승에 노출되는 등 가계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소비자가 용량변경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3일(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주요내용)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접수현황, 사업자와의 자율협약 체결 방안, 단위 가격 표시확대, 용량 등 변경사항 표시의무 제도화 방안 등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이 참가격* 내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 또한 11월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개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로 전국단위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128개 품목(336개 상품)의 가격 정보 제공

** 언론에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보도된 건에 대한 조사결과까지 포함할 경우, 총 9개 품목(37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됨

소비자원-사업자 간 자율협약 추진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우선,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협약을 추진하여 제품 용량 변경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원-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통해서도 유통사가 취급하는 약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정보를 제공받아 용량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율협약을 통해 제조사 및 유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용량변경 관련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소비자원·단체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제공 확대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24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변동 정보까지 조사하여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도 참가격 조사품목 이외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도적 차원의 정보공개 확대

우선, 산업부는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을 현재의 84개 품목에서 보다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제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및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되어 단위 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 등을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자율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 1.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2.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승규 (044-200-4405)
		담당자	사무관	권혜지 (044-200-4406)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책임자	과 장	김정기 (044-203-4380)
		담당자	사무관	김애경 (044-203-4384)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	책임자	과 장	권병철 (044-201-6805)
		담당자	사무관	홍정호 (044-201-6829)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철희 (043-719-2191)
		담당자	사무관	최총렬 (043-719-2188)
기재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2770)
		담당자	사무관	이은우 (044-215-2772)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책임자	팀 장	정혜운 (043-880-5691)
		담당자	대 리	노웅비 (043-880-5698)

- 「용량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근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 슈링크플레이션은 사실상 가격인상임에도 가격인상과 달리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용량변경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① 우선 실태조사 및 신고접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비자원에서는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과 신고센터 및 언론 제보를 통해 접수된 건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그 결과 총 9개 품목의 37개 상품에서 용량변경이 확인되었습니다.
- ② 향후 이러한 용량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 소비자원 직접 모니터링 품목을 현재 128개 품목에서 15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 소비자단체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용량 변경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또한 사업자 자율협약을 통해,

- 식품제조사는 생산제품의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 유통사는 주요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의 용량정보를 공유하여 소비자들이 용량변경 제품을 선별하여 별도 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사업자의 정보제공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유통업자의 단위가격표시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대상을 현행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식품 및 생활용품의 경우, 제조업자의 용량축소로 단위가격이 변동하면 변경사항을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 사업자가 별도 고지 없이 용량·성분 등을 변경하는 것을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발표하는 「용량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

2023. 12. 13.

관계부처 합동

I.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최근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숨은 물가상승에 노출되는 등 가계부담 증가 우려 제기 →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 요인**
 - * 기업이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은 줄이는 식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것
- 변경된 용량 자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제품에 표기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변경 사실을 인식하기에는 한계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 소비자원 등이 주요 생필품에 대해 단위용량당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용량조정을 통한 가격인상을 인지하기는 곤란

* 가격정보 표시·제공 현황

- (소비자원) 주요 생필품 120여개 품목(330여 개 상품) 대상 가격정보를 수집하고 참가격 및 「소비자24」를 통해 격주로 품목별 단위가격 공개
- (소단협) 39개 품목의 생활필수품에 대한 정기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단위가격을 계산하여 '표준용량'으로 환산한 가격을 공개
- (단위가격 표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부고시 제2021-231호)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지정된 84개 품목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

- ▶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자와 자율협약 및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방안 마련

2.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접수현황

- (실태조사 결과) 참가격 조사대상 중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개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 발견
 - * 견과류(16개), 소시지(1개), 치즈(2개)
- (신고접수 결과) 현재까지 총 53건의 제보가 있었으며, 확인 결과 실제 용량 축소가 있었던 것은 2개 품목(9개 상품)
 - * 우유(2개), 사탕(7개)
- ▶ 실태조사 및 신고접수 결과는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Ⅱ. 기본 방향

- ☐ (자율협약) 제조사 및 유통사와의 자율협약을 통해 용량변경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제도개선 후에는 집행 실태 파악
- ☐ (소비자 모니터링·정보제공 강화) 용량 변동 관련 소비자원 직접조사 품목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제공 방안 다양화
- ☐ (제도개선) 유통업체의 단위가격 표시를 확대하고, 제조업체의 용량 등 변경사항에 대한 고지 또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Ⅲ. 소비자 정보제공 방안

1. 사업자 자발적 고지 유도

- ☐ (제조사 자율협약) 생산제품의 용량 변경시 해당 사실 사전 고지(자사 홈페이지) 및 한국소비자원 통지
 - 소비자원-식품사업자 간 정례협의체 참여사업자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추후 참여 사업자 확대

2. 주요 품목 모니터링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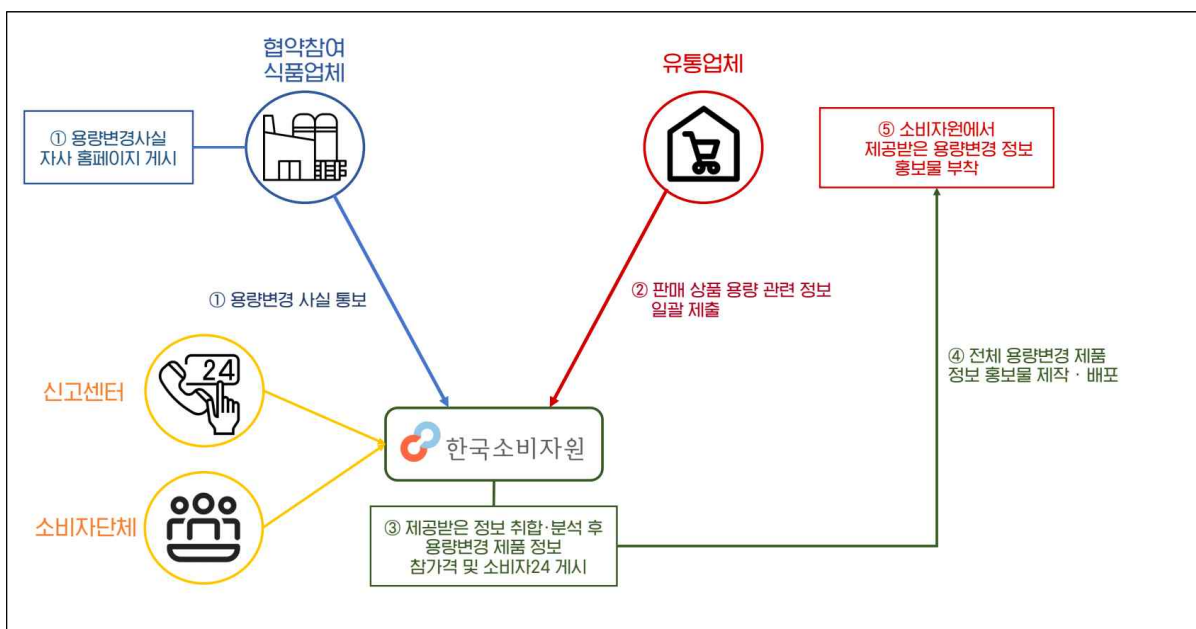
- ☐ (유통사 자율협약)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서 유통되는 1만여개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운영*

* 용량변경 등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제도개선 전까지 공백이 없도록 추진

- (유통업체) 판매하고 있는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의 용량 등 정보를 소비자원에 제출 (매분기)
- (소비자원) 용량변경 제품 선별·검증 후 홍보물 제작·배포

3. 소비자원 · 단체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확대

- (참가격 확대개편) 소비자원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주요 생필품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24~)
 - * 전국 500여개 판매점의 가격정보 데이터를 격주로 조사·분석하여 공개
- 또한,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하여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 상시 제공 (참가격·소비자24)
- 확대 개편된 참가격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자율협약 이행점검·신고센터 운영 등을 위해 소비자원 내 **가격조사전담팀 신설**
- (소비자단체 모니터링) 소비자단체를 통해 참가격 조사품목 외 품목들에 대한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 (신고센터 운영) 소비자원 및 참가격 홈페이지 내 개설된 신고센터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제보 접수
- ▶ 한국소비자원은 용량변경 정보를 취합하여 각 유통채널에 고지



4. 단위가격 표시 확대

- (단위가격 표시제 품목 확대) 현재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84개 품목* 외에 즉석조리식품류·컵라면·위생용품 등 단위가격 표시품목 추가 (산업부)
 - * 가공식품(62개), 일용잡화(19개), 신선식품(3개) 총 84개 품목에 대해 단위가격 표시(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 내 모든 소매점포 대상)
- (단위가격 표시제 온라인 확대)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를 온라인까지 확대 (산업부)
 - * 온라인몰 확대 범위(통신판매중개자, 오픈마켓 포함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 추진(~'24년 2월) 후 최종안 마련

5. 표시의무 제도화 및 정보 공개

- (표시의무 제도화) 용량 등의 변경으로 단위가격(출고가격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제품 포장지의 용량표시를 「변경전 용량→변경후 용량」으로 표기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식약처) 식품(식품등의 표시기준)
 - 소비자원에서 용량 등의 변경상품 목록을 작성·유통업체 제공시, 유통업체 내 게시*하여 소비자 안내 제도화 (산업부)
 - * (오프라인 점포) 매장 내 게시, (온라인 점포) 홈페이지 내 게시
- (성분변경 정보공개)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한 원재료 함량 변동시 (사용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관련 정보공개(식약처)
 - * 식품 성분·배합비율 변경 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식품제조업체들이 등록관청에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신고
 - 성분변경은 품질개선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고, 제품의 원재료 함량 및 비율은 각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모두 공개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음

6.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공정위)

- ☐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규격·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

* 상품의 주요 마케팅 요소로 활용되거나, 가격의 실질적 변동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경우

-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에 직접 표기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처 등을 통한 고지 의무 부과

* (예시) 단위가격 표시 대상 및 참가격 조사 대상 품목

-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추는 경우 등을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

* 「소비자기본법」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으로 위반시 법 제86조에 근거하여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IV. 향후 추진계획

- ☐ 사업자 자율협약 체결 : 유통업체(12월), 제조업체(‘24.1.)
- ☐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 개편(‘24.1.)
- ☐ 소비자단체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실시(‘24.1분기~)
- ☐ 제도 개선
 - 소비자기본법 고시 개정안 마련(12월)
 - 단위가격 표시제 품목 및 온라인 확대안 마련(‘24.2.)
 - 성분변경정보 공개방안 확정 및 시행(‘24.2.)
 - 식약처 및 환경부 고시 개정안 마련(‘24.1.)